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PHILIPPINES FREE TRADE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R-PH Issued in (Country) (See Overleaf Notes)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R-PH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six digit number)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the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R-PH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Party Invoicing ☐ Exhibition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하는 양 당사국은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2. 조건: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양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가. 목적지 국가에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나.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장 제4.15조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 다.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장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제11란에 국가명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4조제1항을 충족하는 상품	“RVC 40 또는 CTH”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세번변경 RVC [RVC + 세번변경] 특정 공정	“CTC”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를 들어 “RVC 45퍼센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를 들어, “CTH + RVC 40” “특정 공정”
라. 양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PE”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5. 상품명: 제7란의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6. 본선인도가격(FOB):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본선인도가격(FOB)을 반영합니다.
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합니다.
8. 수출자: 제1란과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체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10. 제3자 송장: 제3자가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제3자 송장”란에 체크(√)를 표시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가 제13란에 기재됩니다.
11. 전시: 상품이 다른 국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송부되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전시 도중 또는 후에 판매된 경우, 부속서 4-가의 규칙 18에 따라, 제13란의 “전시”에 체크(√)를 표시하고 그 전시의 이름과 주소를 제2란에 기재해야 합니다.